

검 토 의 견 서

- 일 시 : 2021. 2. 26.(금)
- 장 소 :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
- 안 건 : 「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(의안번호 제2136호, 김소양 의원 대표발의)

행 정 국

-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.
-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, 채유미·한기영 부위원장님.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- 김소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36호
「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.
-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 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에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책무의 주체로
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장의 책무를
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.
- 관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시장의 책무에
북한이탈주민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
확보하고 아동·청소년·노인·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
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-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

2021. 2. 26.

행정국장 김 태 균